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일반장애 판정을 받은 간부에게 장애보상금 지급>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67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8.
3. 회부연월일 : 2025.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간부에 대해서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 이외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 간부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 일반공무원과 군 간부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현행법 개정을 권고하였음.

이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을 차별없이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3조).

Ⅲ. 검토의견

현행법은 그 밖의 심신장애(전상¹⁾ 및 특수직무공상²⁾ 제외한 심신장애, 이하 “일반장애”라 함) 판정을 받은 병사에게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 간부에게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33조).

개정안은 일반장애 판정을 받은 군 간부에게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현행 ·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 장애원인 및 등급에 따른 장애보상금 지급대상				• 장애원인 및 등급에 따른 장애보상금 지급대상			
장애원인		심신장애등급	지급대상	장애원인		심신장애등급	지급대상
전상		1,2,3,4급	간부, 병사	전상		1,2,3,4급	간부, 병사
특수직무공상		1,2,3,4급	간부, 병사	특수직무공상		1,2,3,4급	간부, 병사
그밖의 심신장애	공상	1,2,3,4급	병사	그밖의 심신장애	공상	1,2,3,4급	간부, 병사
	비공상	1,2,3급	병사		비공상	1,2,3급	병사

-
- 1) 적과의 교전,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상·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상·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예:심해구조, 불발탄 제거, 강하·상륙임무, 대테러, 접적지역 수색·정찰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등”이라 한다)에게는</u>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 ----- ----- ----- <u>사람에게는</u>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장애보상금) ① <u>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u>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33조(장애보상금) ① <u>군인</u>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u>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u>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삭 제>

<u>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u> ③ 외국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u>제1항 및 제2항</u>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u>제1항 및 제2항</u>에 따른 심신장애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⑤ (생략)	③ ----- ----- ----- -----<u>제1항</u>----- ----- ----- -----. ④ <u>제1항</u>----- ----- -----. ⑤ (현행과 같음)
--	--

□ 법 제33조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애보상금³⁾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임.⁴⁾

현행법은 병사 등 의무복무자에 대해서는 일반장애 중 심신장애 등급이 1~3급인 경우에는 공상과 비공상 모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4급인 경우에는 공상에 대해 장애보상금을 지급(비공상인

3) ① 병사 등(법 제33조제1항)의 경우 전상, 특수직무공상 외에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인 경우 공상·비공상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등급 1~3급) 장애보상금 지급 * 4급은 공상만 지급

② 간부(법 제33조제2항)의 경우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음

* 간부 일반장애는 공무상요양비, 단체보험, 상이연금 등과의 이중보장이 가능하므로 '20.6월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시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4)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두9023 판결

경우는 장애보상금 미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교·부사관 등 간부에 대하여는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해서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일반장애’의 경우에는 장애보상금과 상이연금이 이중지급되고 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202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이연금 또는 단체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간부가 장애보상금까지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적 결함이며 병사 대비 차별받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방부장관에게 장애보상금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일반장애 판정을 받은 군 간부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판정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과 군인의 희생·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라고 명시하여, 입법취지가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 공무상 일반장애 판정을 받은 간부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개정안 제33조제1항과 같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을 “군인”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비공상으로 인해 일반장애 제1급~제3급 판정을 받은 간부도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 시에는 입법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상 일반장애 판정을 받은 간부에 한정하도록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핵심내용]

구분	舊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지급기준	개인 기준소득월액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그 밖의 심신장애’ 장애보상금 지급배수	장애보상등급 1급 7.8배	장애보상등급 1급 9배
	장애보상등급 2급 5.2배	장애보상등급 2급 6배
	장애보상등급 3급 3.9배	장애보상등급 3급 4.5배
	장애보상등급 4급 2.6배	장애보상등급 4급 3배
장애 발생 원인별 차등지급	없 음	• (전상) ‘그 밖의 심신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 (특수직무공상) ‘그 밖의 심신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
신분별 지급대상 구분	• 구분 없음 • 간부·병사 모두 심신장애 판정시 보상	• (간부) 전상, 특수직무공상만 보상 • (병사) 전상, 특수직무공상, 공상, 비공상(1~3급) 보상

자료: 국방부 보건복지관

□ 또한, 2019년 12월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군인연금법」에서 운영해오던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면서,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간부의 일반장애를 제외하게 된 배경은 구(舊) 「군인연금법」에서는 장애를 얻어 퇴직하는 간부의 경우 상이연금과 보훈급여에 더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⁵⁾

[군인 재해보상법상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

구 분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지급방식	매월	1회
목적	생계 · 소득보전	장해 자체 손해보상
성격	사회보장	위자료
기능	장기 생활보호	최소 피해 보전 및 심리위로
지급대상 심사	군인재해보상심의회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각군)

자료: 국방부 보건복지관

이에 장애보상금과 상이연금 중복 지급 방식을 규정한 장애보상금 지급체계 개편의 취지도 고려하여, 개정안에서 규정한 상이연금 수급자에 대한 장애보상금 중복 지급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간부가 ‘그 밖의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취지에 동의하고, 개정안 본문에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은 공상 결정을 받은 간부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적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한다는 입장임.

□ 참고로, 국방부에 따르면 공상으로 인한 장애보상금 1~4급 장애를 입은 간부에게 장애보상금 지급 시 연간 약 84.7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5) 「군인재해보상법」상 상이연금은 장해로 인한 장기적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생활보장적 연금 급여이고, 장애보상금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 자체에 대한 일시적 손해보상금임.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 최근 6년간 장애보상금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편성	집행 (%)	편성	집행 (%)	편성	집행 (%)	편성	집행 (%)	편성	집행 (%)	편성	집행 (%)
14,177	14,814 (104.5)	15,140	10,594 (69.97)	14,695	10,010 (68.12)	10,652	7,276 (68.31)	11,268	7,251 (64.36)	9,862	7,300 (74.02)

○ 최근 4년간 장애보상금 지급 인원 및 지급액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인원 (명)	전상	1급	-	-	-	-
		2급	-	-	2	1
		3급	-	-	2	-
		4급	-	-	-	-
	특수직무 공상	1급	1	-	1	1
		2급	1	1	3	-
		3급	4	2	2	3
		4급	1	2	2	3
	그 밖의 심신장애	1급	42	31	39	34
		2급	30	20	21	17
		3급	80	71	48	73
		4급	299	196	167	165
	합 계		458	323	287	297
금액 (백만원)	전상	1급	-	-	-	-
		2급	-	-	163	86
		3급	-	-	123	-
		4급	-	-	-	-
	특수직무 공상	1급	91	-	93	93
		2급	61	61	186	-
		3급	182	91	93	141
		4급	30	61	61	95
	그 밖의 심신장애	1급	1,968	1,497	1,925	1,722
		2급	943	650	690	550
		3급	1,918	1,731	1,169	1,827
		4급	4,816	3,185	2,748	2,788
	합 계		10,010	7,276	7,251	7,300

○ 장애보상금 등급별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구분	장애보상금 등급	지급 대상**	간 부	병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배수		
그 밖의 심신장애	1급	공상 및 <u>비공상</u>	해당없음	51,390,000원	(9배)
	2급			34,260,000원	(6배)
	3급			25,700,000원	(4.5배)
	4급	공상	해당없음	17,130,000원	(3배)
특수직무공상* (일반장애×1.88배)	1급	공상	96,610,000원		(16.92배)
	2급		64,410,000원		(11.28배)
	3급		48,310,000원		(8.46배)
	4급		32,200,000원		(5.64배)
전상 (일반장애×2.5배)	1급	공상	128,480,000원		(22.5배)
	2급		85,650,000원		(15배)
	3급		64,237,500원		(11.25배)
	4급		42,830,000원		(7.5배)

* 심해구조, 불발탄 제거, 강하·상륙임무, 對테러, 접적지역 수색·정찰 등과 관련된 부상·질병

** 1~3급은 공상·비공상 모두 지급하며, 4급은 공상인 경우에만 지급

*** '25년 기준 571만 원

○ 장애보상금 지급 절차

▶ (군병원)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군 병원 방문 시, 군의관의 판단으로 의무조사위원회 의무조사 실시 후 심신장애등급 판정*

* 근거: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



▶ (각 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군인의 공상·비공상 여부를 심사



▶ (각 군) 최종적으로 심신장애등급, 전공사상심사결과, 전역유무 등을 판단하여 장애보상금 지급유무 및 지급액을 결정

* 근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기준)